

제27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제27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7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 목록

- 순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농식품 온라인비즈니스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순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4. 1. 17. ~ 1. 23.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월 23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1)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순천시의회) / 우 : 57956

2) 이메일 : melang418@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각 1부. 끝.

순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이영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4092호
----------	--------

발의연월일 : 2024. 1. 16.

이영란 의원, 오행숙 의원

김미연 의원, 유승현 의원

발의자 : 장경원 의원, 양동진 의원

이복남 의원, 김태훈 의원

서선란 의원, 최현아 의원

박계수 의원, 정홍준 의원

1. 제정이유

- 각종 환경의 변화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시책 등을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앴으로써 시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적용범위(안 제3조)
- 일몰의 권고(안 제4조)
- 일몰대상 시책 등(안 제5조)
- 일몰의 심의·결정(안 제6조)
- 위원회의 설치운영(안 제7조)
-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안 제8조)
- 의회보고(안 제9조)
- 의견의 청취(안 제10조)
- 환류 및 후속조치 등(안 제11조)

3. 제정안: 붙임 1

4. 관련법령: 해당없음

5. 예산상황: 붙임 2

【붙임 1】

순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해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 요인을 없애므로써 시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순천시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시책, 제도, 행사, 일반업무 등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심의·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하부 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제4조(일몰의 권고) ① 순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일몰대상 사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권고 대상 사업의 선정은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제5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6조의 일몰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2. 투자비용 대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4. 대다수 시민으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5. 관행에 의해 답습적으로 반복 추진되는 시책 등
6. 여러 부서에서 중복 시행하는 유사 업무로 일원화가 필요한 시책 등
7.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일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제6조(일몰의 심의·결정) 시장은 전년도 사업성과,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회의 권고 등을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시책 일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기능은 순천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해당 부서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자체평가서 작성 및 단·실·국·소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의회보고) 시장은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일몰결정 시 자치법규의 개폐를 수반하는 등 의회와 관련된 시책은 사전에 해당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대상사업 심의과정에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환류 및 후속조치 등) ① 시장은 일몰 결정에 따른 사무분장, 인력, 예산 등의 조정 및 일몰 추진사항의 전 직원 공유, 시민 홍보 등 후속조치에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일몰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시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

저히 해야 하며, 의장의 요청이 있을 시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순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3. 미첨부 근거 규정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

4. 미첨부 사유

○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 생략

5. 작성자: 순천시의회 의원 이영란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참고 1**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조례명	공포일	부서
1	가평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2018. 4. 11.	기획예산담당관
2	강진군 시책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	2023. 3. 30.	기획홍보실
3	과천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	2021. 2. 17.	기획홍보담당관
4	광명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	2018. 7. 31.	정책기획과
5	광양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2021. 2. 17.	기획예산실
6	광주광역시 남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2023. 10. 13.	기획실
7	광주광역시 서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2023. 8. 14.	기획실 기획팀
8	구리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2021. 3. 12.	기획예산담당관
9	군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2022. 12. 15.	기획예산과
10	나주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	2023. 9. 26.	기획예산실
11	남동구 시책 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	2020. 2. 28.	기획예산과
12	남원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	2020. 5. 22.	기획실(기획)
13	남해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2022. 12. 6.	기획조정실
14	당진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2021. 7. 30.	기획예산담당관
15	동두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2019. 7. 1.	기획감사담당관
16	동해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	2019. 8. 16.	
17	무안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2016. 12. 26.	기획실 기획
18	보은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	2021. 9. 17.	기획감사실
19	부산광역시 연제구 시책일몰제 조례	2023. 8. 10.	기획감사실
20	부산광역시 영도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2022. 10. 12.	기획감사실
21	부산광역시 중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2021. 2. 2.	기획감사실
22	부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2018. 5. 21.	정책기획과
23	사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2021. 4. 1.	기획예산담당관
24	상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2019. 1. 1.	기획예산실
25	서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2021. 3. 25.	기획예산담당관
26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2023. 10. 12.	기획예산과
27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2021. 9. 16.	기획예산과
28	서천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2020. 11. 10.	기획예산담당관
29	성남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2021. 4. 5.	정책기획과
30	속초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2019. 12. 13.	기획예산과

31	시흥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2019. 8. 12.	정책기획과
32	안양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2020. 7. 10.	정책기획과
33	양평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2018. 11. 5.	기획예산담당관
34	영동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2023. 11. 6.	기획감사과
35	영암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2019. 4. 11.	기획감사실
36	옥천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2019. 3. 20.	기획예산담당관
37	완주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2023. 5. 25.	기획예산실
38	울산광역시 남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2021. 12. 28.	기획예산실
39	의령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2020. 12. 16.	기획예산담당관
40	의왕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2020. 9. 29.	기획예산담당관
41	익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2021. 4. 5.	기획예산과
42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2023. 9. 27.	기획조정실
43	임실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	2021. 5. 24.	기획감사실
44	전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2019. 4. 19.	기획예산과
45	정읍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2019. 9. 27.	기획예산실
46	철원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2021. 12. 13.	기획감사실
47	파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2023. 2. 9.	미래전략관
48	평택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2022. 11. 17.	기획예산과
49	포항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2010. 2. 16.	정책기획관
50	하남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2023. 5. 1.	기획조정관
51	함평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2023. 11. 29.	기획예산실
52	홍성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	2022. 12. 27.	정책기획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4093호
----------	--------

발의연월일 : 2024. 1. 16.

발의자 : 이영란 의원, 오행숙 의원
김미연 의원, 유승현 의원
장경원 의원, 양동진 의원
이복남 의원, 김태훈 의원
서선란 의원, 최현아 의원
박계수 의원, 정홍준 의원

1. 개정이유

- 각종 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 교통비·식비 등 실비, 비대면 회의 참석수당 지급 여부 등 부서별로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관계 규정 등을 조례에 명시하여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참석수당(비대면 회의 포함), 실비(교통비, 식비, 숙박비), 심사수당 등 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5조)

3. 개정안: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순천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붙임 1】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참석수당 등) ①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을 실비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단순한 회의 참석 외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법령·조례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순천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위원은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회기가 아닌 경우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화상회의 등 사이버 회의 시 참석수당은 지급하되 교통비 등은 지급하지 않으며 단순한 E-mail 등을 통한 심사의 경우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심사수당만 지급한다.

⑤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갈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기타 위원회 참석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순천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계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15조(실비보상)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참석수당·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갈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u>	<u>제15조(참석수당 등) ①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을 실비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u> <u>② 단순한 회의 참석 외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법령·조례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u> <u>③ 순천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위원은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회기가 아닌 경우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u> <u>④ 화상회의 등 사이버 회의 시 참석수당은 지급하되 교통비 등은 지급하지 않으며 단순한 E-mail 등을 통한 심사의 경우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심사수당만 지급한다.</u> <u>⑤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갈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u> <u>⑥ 기타 위원회 참석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순천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계규정에 따른다.</u>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조 례 명: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발생 요인: 해당 없음
- 미첨부 근거 규정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2호
- 미첨부 사유
○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 생략
- 작성자: 순천시의회의 의원 이영란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1) 위원회 참석수당

- 예산에 계상된 단가 또는 자치단체가 조례 등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가능
- 공무원의 경우 자기가 직접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화상회의 등 사이버 회의 시
 - 위원회 참석수당은 지급하되, 교통비 등은 미지급
 - 단순히 E-mail 등을 통하여 심사할 경우 법령 및 조례에 따라 "2)"항목의 심사수당만 지급한다.
-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 등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심사수당

- 법령·조례,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지급한다.
-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계상된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자기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2024 순천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9 위원회 참석수당

○ 경비성격 : 법령·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한 수당

○ 기 준 액

구 분		일반위원회	사이버위원회	비 고
금액	2시간 이내	100천원	50천원	기본료
	2시간 초과 시	30천원	20천원	1일 1회에 한함

※ (서면심사 수당) 사이버위원회 수당으로 대체
(심사수당)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심사수당) 지급기준 준용,
교통비, 식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에서 별도계상 가능

참고 2

기존 조례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17. 12. 29.]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1808호, 2017. 12. 29., 일부개정]

전라남도 순천시(자치행정과), 749-545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전문가와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사결정의 합리성·공정성·투명성을 높여서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라 함은 법령 및 조례 또는 원활한 시정수행을 위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모든 위원회를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라 함은 법령,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라 함은 위원회의 간사, 서기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
4. "용역·공사"라 함은 시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연구, 조사, 계획수립, 설계 및 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 운영하는 위원회
2. 상급기관의 지침이나 훈령에 근거하여 구성 운영하는 위원회
3.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구성 운영하는 위원회
4. 그 밖에 시장이 시정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 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위원구성 등) ① 시장은 각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위촉하여야 하며, 이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05.09>

1. 시의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추천한 자
2. 순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시의원
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4.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②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③ 시장은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미리 인원수·자격·선정기준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보·각종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거나 위촉대상 위원의 정수에 부족할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한 위원중에서 호선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5조의 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하거나 자문에 응할 수 없다.<신설 2017.12.29.>

1. 위원이 안전의 당사자 등이거나 당사자 등과 「민법」 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안전과 관련하여 증언이나 공사·용역수행, 감정(鑑定)을 한 경우
 3. 위원이 안전의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안전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경우
- ② 위원이 공정한 심의 등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등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심의 등을 중단하고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지체 없이 배제하여야 한다.<신설 2017.12.29.>
-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스스로 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신설 2017.12.29.>

제5조의 3(위원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의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신설 2017.12.29.>

제6조(위원명단 공개) 시장은 안전 심의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명단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보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용역·공사 참여 금지)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각종 용역이나 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그 대상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회의의 고지) ① 위원회의 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전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늦어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전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전은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의 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 방청을 원하는 자는 위원장에게 사전에 신청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0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의 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전,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의 장은 위원회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1년에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특별한 안건이 없을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일과시간 이후(야간)에 개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된 위원회 조례의 부칙에는 유효기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④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이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신설 2017.12.29.>

제13조(위원회 운영실적 평가 및 정비) ① 시장은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위원회 운영 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그 존치의 필요성 유무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결과 2년이상 운영실적이 없어 그 존치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이 개정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노력하여야 하며,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나 위원회의 통·폐합 운영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 관리) ① 담당부서는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동일인의 중복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실비보상)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참석수당·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갈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순천시 농식품 온라인비즈니스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4099호
----------	--------

○ 제출자: 순천시장

○ 제출일: 2024. 1. 16.

1. 제정이유

- 농식품 온라인비즈니스관 운영 사항 법제화
- 순천시민의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 마케팅 확대

2. 주요내용

- (안 제1조 ~ 제6조) 농식품 온라인 비즈니스관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 목적, 정의, 위치, 시설, 기능, 운영시간 등
- (안 제7조 ~ 제13조) 대관 운영에 관한 사항
 - 대관 신청·허가·제한·사용료 등

3. 제 정 안: 별첨

4. 관련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6조의2

5. 관련부서 의견: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3. 12. 13. ~ 2024. 1. 2.) 결과: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2023. 11. 27.(가족복지과-32435호)
- 예산부서 심의필: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2023. 11. 17.(기획예산실-16084호)
- 법제부서 공고필: 2023. 12. 12.(순천시 공고 제2023-2518호)

순천시 농식품 온라인비즈니스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민의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 마케팅 확대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순천시 농식품 온라인비즈니스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라인비즈니스관”이란 순천시가 설치한 영상제작실 및 부대시설로 이루어진 농특산물 온라인 마케팅 관련 종합시설물을 말한다.
2. “대관자”란 대관허가를 받아 온라인비즈니스관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대관료”란 대관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온라인비즈니스관의 위치는 순천시 서면 둔대수계길 28에 둔다.

제4조(시설 및 지원) ① 온라인비즈니스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상제작실
2. 전산교육실
3. 농업인소통실

②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 운영 인력과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온라인비즈니스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의 영상미디어 활동 지원
2. 온라인 전자상거래 관련 교육 지원
3. 회의, 세미나 등 장소 제공

제6조(운영시간) ① 온라인비즈니스관의 운영시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대관허가 신청 등) ① 온라인비즈니스관 대관허가 신청자는(다수인이 공동 대관하는 경우에는 그 중 대표자 1명) 대관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 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관 허가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한다.

③ 시장은 온라인비즈니스관의 대관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되, 대관 허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대관허가의 제한) 시장은 시민 등의 온라인비즈니스관 사용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대관허가의 취소) 시장은 대관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관허가를 받은 경우
3. 온라인비즈니스관 시설 및 관련 장비의 훼손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대관자의 의무 등) ① 대관자는 온라인비즈니스관 대관 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대관자는 안전수칙 위반 등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시설과 장비 등이 파손될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대관자는 온라인비즈니스관에서 부주의로 발생하는 화재, 도난 및 파손 등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제11조(대관료) ① 대관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가 행사 및 교육을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우: 면제
2.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법인 및 단체가 대관하는 경우: 면제(별지 제2호서식 및 사용자가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함)

제12조(대관료의 납부 및 반환) ① 대관자는 대관료를 순천시에서 발행한 고지서 기한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1. 온라인비즈니스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2. 천재지변, 재해 등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대관자가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③ 대관료의 징수, 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④ 시장은 제2항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30일 이내에 대관료를 대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농식품 온라인비즈니스관 대관료(제11조 관련)

시설명	대관료	기본시간	비고
영상제작실	40,000원	4시간	기본시간 초과 시 1시간당 5,000원 (영상장비, 냉난방기 등 포함)
전산교육실	20,000원	2시간	기본시간 초과 시 1시간당 5,000원 (컴퓨터 냉난방기 등 포함)
농업인소통실	10,000원	2시간	기본시간 초과 시 1시간당 5,000원 (냉난방기 등 포함)

※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이라도 1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순천시 농식품 온라인비즈니스관 대관 신청서(제7조 관련)				
인 적 사 항	성 명 또 는 기관명		대 관 예정일	
	주 소			
	연 락 처		인 원	
대관 시설		☐ 영상제작실 ☐ 전산교육실 ☐ 농업인소통실		
대관 날짜				
신청 시간	영상 제작실	☐ 오전(09:00 ~ 13:00) ☐ 오후(14:00 ~ 18:00)		
	교육실 /소통실	☐ 09:00 ~ 11:00 ☐ 13:00 ~ 15:00 ☐ 16:00 ~ 18:00		
대관 목적				
「순천시 농식품 온라인비즈니스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대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순천시 농식품 온라인비즈니스관 대관료 면제 신청서(제11조 관련)				
신 청 인	대 관 예정일			
	성 명		연 락 처	
	주 소			
면제사유	☐ 국가 또는 시가 행사 및 교육을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우 ☐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법인 및 단체가 대관하는 경우			
「순천시 농식품 온라인비즈니스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대관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 농업인 및 단체: 농업경영체증명서 - 농업법인: 법인인감증명서			

순천시장 귀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의 안 명: 순천시 농식품 온라인비즈니스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 안 제4조(시설) ②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 운영 인력과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미첨부 근거 규정: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

4.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

5.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 과장 신순옥(☎ 749-8686)
농식품가공팀장 김미진(☎ 749-6175)

참고

관련 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6조의2(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에 기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표준화 및 융복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정보통신기술 표준·융복합의 실태조사, 연구, 개발 및 보급·확산
2.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의 표준화 및 융복합에 필요한 사업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순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강형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4094호
----------	--------

발의연월일 : 2024. 1. 16.

강형구 의원, 정광현 의원
김미연 의원, 이복남 의원
발의자 : 양동진 의원, 김태훈 의원
유승현 의원, 장경원 의원
오행숙 의원

1. 제정이유

-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을 대상으로 사업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사업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절차(안 제5조~제6조)
- 다. 도시재생 사후관리 사업(안 제7조)
- 라. 도시재생 사후관리 점검(안 제8조)

3. 제정안: 붙임1

4. 관련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5. 예산상황: 붙임 2(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1】

순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지속하고 확산하는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계획을 말한다.
3.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도시재생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고 확산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확산하는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완료 이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

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목표와 시행 성과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에 관한 분석 및 향후 운영·관리 계획
3. 도시쇠퇴 방지와 도시재생 사업성과 확산 계획
4.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평가체계 등 구체적인 점검계획
5.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사후관리계획 수립 절차 등) 시장은 사후관리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도시재생조례에 따른 순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검토와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순천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사업)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
2.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사업
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정비·운영·관리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점검 등) ① 시장은 위원회와 센터를 통해 매년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별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성과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사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시재생 사후관리에 대한 점검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주민 의견 반영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와 센터에 사후관리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순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3. 미첨부 근거 규정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2호

4.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5. 작성자: 순천시의회 의원 강형구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③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전략 계획이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참고 2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조례명	공포일	부서
1	고양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2023. 11. 17.	도시정비과
2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2023. 9. 25.	
3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2023. 11. 7.	도시재생과
4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2023. 12. 23.	도심활성화팀
5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2023. 8. 16.	창조도시과
6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조례	2023. 9. 27.	도시개발과
7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2023. 10. 12.	도시계획관
8	포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2023. 2. 22.	미래도시과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4100호
----------	--------

- 제출자: 순천시장
- 제출일: 2024. 1. 16.

1. 개정이유

- 순천자연휴양림 시설물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휴관일 조정
- 「숲나들e」 웹사이트 이용약관과 맞지 않는 내용 정비
- 반려동물 천만시대에 맞추어 반려동물 입장 일부 허용

2. 주요내용

- (안 제4조제2항) 휴양림의 운영시간 등에 관한 사항
 - 휴관일 조정 / 매월 1회→ 매월 2회
- (안 제13조) 시설물 사용의 예약에 관한 사항
 - 예약 후 5일 이내 결제 → 예약 후 다음날 23시까지 납부 및 예약일이 사용일로부터 7일 이내일 경우에는 예약시간으로부터 3시간 이내에 납부
- (안 제17조, 별표 4) 〈신설〉 반려동물 입장 허용에 관한 사항

3. 개 정 안: 별첨

4. 관련법령: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5. 관련부서 의견: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3. 11. 15. ~ 12. 5.) 결과: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2023. 11. 14.(가족복지과-31279호)
- 예산부서 심의필: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2023. 11. 8.(기획예산실-15727호)
- 법제부서 공고필: 2023. 11. 10.(순천시 산림자원과 공고 제2023-10호)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매월 첫째”를 “성수기(7~8월)를 제외한 매월 첫째·셋째”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를 “다음날 23시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예약일이 사용일로부터 7일 이내일 경우에는 예약시간으로부터 3시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7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반려동물 입장) 반려동물 입장 허용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순천자연휴양림 반려동물 입장 허용기준(제17조 관련)

입장불가	관리상태	이용시설	동반 반려견수
맹견 8종 (장애인 보조견 제외)	■반려동물 등록완료 ■최근 1년 이내 예방접종완료(광견병) ■외견상 건강양호	■숲속의 집 중 일부 동에 한함	■ 최대 2마리 가능 (단, 1인당 1마리)

※ 맹견 8종: 도사견, 아메리칸 핏볼(아메리칸 핏볼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캥갈, 울프독 등 맹견잡종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휴양림의 이용시간 등) ① (생략) ② 휴양림의 정기 휴관일은 <u>매월 첫째 주 화요일</u>로 한다. 다만, 해당일이 공휴일 경우 그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제13조(시설물 사용의 예약) ① (생략) ② 시설물 사용 예약자는 사용료를 예약 후 <u>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u>, 이 기간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약이 해약된 것으로 본다. <u><신설></u> 제17조(시행규칙) (생략) <u><신설></u>	제4조(휴양림의 이용시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u>성수기(7~8월)를 제외한 매월 첫째·셋째</u> -----. 제13조(시설물 사용의 예약) ① (현행과 같음) ② ----- <u>다음날 23시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예약일이 사용일로부터 7일 이내일 경우에는 예약시간으로부터 3시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u> -----. 제17조(반려동물 입장) 반려동물 입장 허용 기준은 <u>별표 4와 같다.</u> 제18조(시행규칙) (현행 제17조와 같음) [별표 4] 순천자연휴양림 반려동물 입장 허용기준(제17조 관련) <table><tr><th>입장불가</th><th>관리상태</th><th>이용시설</th><th>동반 반려견수</th></tr><tr><td>맹견 8종 (장애인 보조견 제외)</td><td>■반려동물 등록완료 ■최근 1년 이내 예방접종완료(광견병 제외) ■외견상 건강양호</td><td>■숙소의 집 중 일부 등에 한함</td><td>■ 최대 2마리 가능 (단, 1인당 1마리)</td></tr></table> ※ 맹견 8종: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마스티프, 라이카, 오보치카, 캥갈, 울프독 등 맹견합종	입장불가	관리상태	이용시설	동반 반려견수	맹견 8종 (장애인 보조견 제외)	■반려동물 등록완료 ■최근 1년 이내 예방접종완료(광견병 제외) ■외견상 건강양호	■숙소의 집 중 일부 등에 한함	■ 최대 2마리 가능 (단, 1인당 1마리)
입장불가	관리상태	이용시설	동반 반려견수						
맹견 8종 (장애인 보조견 제외)	■반려동물 등록완료 ■최근 1년 이내 예방접종완료(광견병 제외) ■외견상 건강양호	■숙소의 집 중 일부 등에 한함	■ 최대 2마리 가능 (단, 1인당 1마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의 안 명: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3. 미첨부 근거 규정: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2호

4.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5. 작성자

○ 생태환경센터	산림자원과	과장	김효중(☎ 749-8734)
		휴양림팀장	이세경(☎ 749-3341)

참고

관련 법령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자연휴양림의 조성) ① 산림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국유림에 휴양시설의 설치 및 숲가꾸기 등을 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양시설 및 숲가꾸기 등의 조성계획(이하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산림에 휴양시설의 설치 및 숲가꾸기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휴양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조성계획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21조의5(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 ①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